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53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05. 28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,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·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의 종류 중 성적우수장학금 추가(안 제2조)
- 나.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체화(안 제3조제1항)
- 다. 차액 지급 단서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)
- 라.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 정비
  - 1) 구지회장의 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 신설(안 제4조제2항 신설)
  - 2) 장학생 선정 주체를 구지회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및 중복 지급 확인 의무 신설(안 제5조)
  - 3) 장학생 선정 인원 구체화(안 제6조)
- 마.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9조,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첨부

2) 입법예고(2024. 4. 26. ~ 2024. 5. 16.) 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
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6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새마을 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새마을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장학금의”를 “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특기생장학금”을 “특기생장학금, 성적우수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”를 “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”으로, “자,”를 “사람,”으로,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유공자 장학생: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지도자의 자녀. 다만,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.

3. 특기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·체육·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4. 성적우수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“C”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. 다만,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같음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(이하 “타 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. 다만,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”을 “새마을운동중앙”으로, “이 공동으로”를 “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”로, “추천한다”를 “장학생을 추천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

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상훈법에 의한”을 “「상훈법」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 중 “표창중”을 “표창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3호 중 “새마을사업중”을 “새마을사업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(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)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장학생 선정 인원)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”을 “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없는 한 당해”를 “없으면 해당”으로, “계속”을 “장학금을 계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특기자로서”를 “특기

장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

4.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 중 “장학금”을 “구청장은 장학금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<u>새마을 장학금(이하“장학금”이라 한다)</u>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<u>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/u></p> 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<u>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남·녀 새마을지도자(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, 이하 “지도자”라 한다)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새마을장학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장학금의 종류) <u>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----- 특기생장학금, 성적우수장학금---</u>.</p> <p>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① <u>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----- -- 사람, ----- ----- 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.</u></p> <p>1. <u>유공자 장학생: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지도자</u></p>

은 전.현직 지도자의 자녀

2. 삭 제

3.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<신 설>

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2자녀까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

의 자녀. 다만,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.

3. 특기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·체육·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
4. 성적우수 장학생: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“C”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. 다만,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같음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(이하 “타 장학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. 다만,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



제4조(추천)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“이라 한다)과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“이라 한다)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(이하 “구지회장“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

<신 설>

제5조(선정) 장학생은 구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 받은 학생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, 심사하여 매학기 초에 선정한다.

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.

제4조(추천) ① 새마을운동중앙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-----  
---- 장학생을 추천한다.

②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.

제5조(선정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

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2.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3.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4. 기타 유공지도자

<신 설>

제6조(장학생 선정 인원)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한 다.

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

1.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그만 들 때
2. 삭 제

다.

1. 「상훈법」에 따른 -----  
-----  
-----
2. ----- 표창 중 -----  
-----
3. 새마을사업 중 -----  
-----
4. 그 밖의 -----

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(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)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6조(장학생 선정 인원)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 다.

제9조(지급 및 정지) 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없으면 해당 ----- 장학금을 계속 -----.

1.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

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

4. 장학생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지급대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 예산에 계상하고,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3. ----- 특기 장학생-----  
-----

4.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장학기금 확보) 구청장은 장학금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자치행정과 주민협치팀 이병인
연 락 처	2627 - 2206

# 현행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

[시행 2020. 3. 2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96호, 2020. 3. 25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 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1.02.08, 2020.3.25>

**제2조(장학금의 종류)**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,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01.02.08>

**제3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**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남·녀 새마을지도자(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, 이하 "지도자"라 한다)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.<개정 1999.07.05, 2020.3.25>

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지도자의 자녀<개정 2020.3.25>
2. 삭제 <1999.07.05>

3.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

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2자녀까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.<개정 2020.3.25>

**제4조(추천)**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(이하 "구협의회장"이라 한다)과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"구부녀회장"이라 한다)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(본부)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(이하 "구지회장"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<개정 2020.3.25>

**제5조(선정)** 장학생은 구지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 받은 학생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, 심사하여 매학기 초에 선정한다.<개정 1999.07.05, 2020.3.25>

1.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2.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
3.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

4. 기타 유공지도자

**제6조(장학생 선정 인원)**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한다.<개정 1999.07.05, 2020.3.25>

**제7조(장학금)**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20.3.25>

**제8조(장학금의 지급시기)**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.  
<개정 2020.3.25>

**제9조(지급 및 정지)**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3.25>

1.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그만 둘 때<개정 2001.02.08>
2. 삭제 <1999.07.05>
3.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<개정 1999.07.05, 2001.02.08>
4. 장학생의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5. 삭제 <2001.02.08>

② 구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지급대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**제10조(장학생의 의무)** 삭제 <1999.07.05>

**제11조(장학기금 확보)**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,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1997.05.10>

**제12조(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# 관계 법령

##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( 약칭: 새마을조직법 )

[시행 2019. 12. 10.] [법률 제16766호, 2019. 12. 10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새마을발전협력과) 044-205-3462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10.>

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
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10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10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